

서식개폐 규정

□ 제정 : 1998. 3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의 개·폐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정당성 및 통일성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(정의) ① “서식의 개정”이라 함은 서식의 내용, 용지의 색채 및 크기, 지질을 변경하거나 또는 두개 이상의 서식을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하거나 하나의 서식을 두 개 이상으로 개편하는 행위를 말한다.

② “서식의 폐지”라 함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서식의 개정전 사용 서식이나 사용가치가 없어진 서식 등을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본교 서식에서 제외하는 행위를 말한다.

제3조(절차) ①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 서식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처장의 협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서식의 개정전 사용서식이나 사용가치가 없어진 서식 등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폐지한다.

제4조(서식개정·폐지대장 비치) 총무과에서는 아래의 서식개정 및 폐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.

서 식 명	구분(개·폐)	일 자	사 유	결 재		
				계	과 장	처 장

제5조(통보) 서식의 개·폐가 확정되면 총무처장은 전 행정부서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